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70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황명선 · 박용갑 · 김병주
이해식 · 김현정 · 임오경
송재봉 · 이재관 · 박균택
박 정 · 박정현 · 손명수
부승찬 · 박범계 · 백선희
송옥주 · 김한규 의원
(17인)

제안이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 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운영 및 인증에 따른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 라.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5 신설).
- 마.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방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동향과 육성 전략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의 기술 및 관련 기업 현황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기술품질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별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중에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대상, 목적별 인증의 신청·기준·절차·방법·갱신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방기술품질인증의 혜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 시험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수출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군수품의 품질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인증의 목적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의3의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정기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증의 취소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첨단전략산업에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한다.

제10조의7(방산혁신전문기업의 혜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전문기업과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방산혁신전문기업을 우선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의 “품질인증지원”을 “국방기술품질인증 지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
12.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인증 기준의 수립, 변경, 폐지
13.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인증 관련 시설, 기술 등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방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u>
② (생 략)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방첨단전략산업의 동향과 육성 전략</u>
<u>10.</u> (생 략) ③ ~ ⑦ (생 략)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 ----- ----- -----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의 기술 및 관련 기업 현황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국방기술품질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별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중에 인증대상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

<신 설>

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대상, 목적별 인증의 신청·기준·절차·방법·갱신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국방기술품질인증의 혜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 시험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수출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

<신 설>

여, 군수품의 품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인증의 목적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의3의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정기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5.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② 인증의 취소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방산혁신전문기업 지
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
로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첨단전
략산업에서 국방기술품질인증
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
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
부터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
을 취소한다.

제10조의7(방산혁신전문기업 혜
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
신전문기업과 국방기술품질인
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u>관한 법률」 제7조제1항본문에</u> <u>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u> <u>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u> <u>있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u> <u>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u> <u>의 국방연구개발에 방산혁신전</u> <u>문기업을 우선 참여시킬 수 있</u> <u>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u> <u>원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u> <u>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수출을 위한 <u>품질인증지원</u>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방기술품질인</u> <u>증 지원</u>

④ . ⑤ (생략)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11.</u> (생략) ②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 품질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u> <u>12.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 품질인증 기준의 수립, 변경, 폐지</u> <u>13.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 품질인증 관련 시설, 기술 등 지원</u> <u>14.</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